

의안번호	2218090
의 퇴 인	김기표의원
회 답 일	2026.7.23.
추계번호	26D191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의무규정
2	안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음	의무규정
3	안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항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	의무규정
4	안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	의무규정
5	안 부칙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항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	의무규정
6	안 부칙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항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3	안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항	
4	안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5	안 부칙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항	
6	안 부칙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항	

2. 상세 사유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배제
 - 제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조작·은폐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를 정함
 -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공무원(공무수탁사인 포함)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의 죄,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가혹행위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죄 등을 포함
- 제정안에 따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고, 소급효가 인정될 경우, 공소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결과에 따른 국가의 배상금 지급 등으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다만, 공소시효 적용배제로 증가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제기 건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건수, 법원의 판결결과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2020~2024년 국가배상금(법원 판결금 및 배상심의회 결정금), 패소부담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아래와 같음

[표 1] 국가배상금 등 지급 현황: 2020~2024년

(단위: 건, 백만원)

	법원 판결금		배상심의회 결정금		패소부담금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	258	62,530	94	210	411	10,041	763	72,781
2021	275	215,908	60	83	430	7,751	765	223,742
2022	293	140,810	57	87	532	7,471	882	148,368
2023	316	93,217	75	170	376	6,011	767	99,398
2024	444	96,285	81	246	754	10,169	1,279	106,700

자료: 2025 법무연감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assembly.go.kr